

**술집 프로토콜: 부록 Y-1**  
**유효일: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오전 12:01**

최신 업데이트:(변경 사항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2021년 5월 5일:**

- 실내 서비스를 위해 술집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실내 수용인원은 최대 수용인원의 25% 또는 100명 중 더 적은 인원입니다.
- 실내 및 야외 좌석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내외 식사 구역에서 텔레비전은 틀어 놓을 수 있습니다.
-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야외에서만 허용됩니다. 실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COVID-19 사례 발생률, 입원율, 사망률이 일부 감소했고 안정돼 보이지만, COVID-19은 여전히 지역사회에 고위험을 초래하며, 모든 주민 및 사업체가 확산을 늦추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운영과 활동을 변경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주정부의 안전한 경제 체계를 위한 청사진에서 규정한 “노란색 등급”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 활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본 프로토콜을 작성했습니다. 사업체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COVID-19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의 깊게 운영해야 하며 본 프로토콜의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과 아래의 요구조건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에서 저위험 식당으로 허가한 술집의 재개에만 적용됩니다.

- 현장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술집은 [식당 프로토콜: 부록 I](#)에 있는 식사를 위한 모든 요구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현재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 섭취를 위한 판매가 승인된 술집은 또한 [소매업체 프로토콜: 부록 B](#)도 준수합니다.
- 술집은 볼링, 다트 보드, 당구대 등의 게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의 수정이나 완전 운영이 허용될 때까지 중단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 제 113789(c)(5)절에 의해 식품 시설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와인이나 맥주 시음을 위해 따로 마련된 시설을 갖춘 자체 와인이나 맥주를 제조하는 와이너리 및 맥주 양조장은 [맥주 양조장, 와이너리, 증류주 양조장을 위한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술집은 LA 카운티 DPH의 [야외 좌석 라이브 행사 및 공연을 위한 프로토콜](#)을 준수하면 야외 좌석 라이브 행사 및 공연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토콜에 따라 모든 술집은 야외 서비스 및 실내 서비스를 본 프로토콜에서 요구하는 변형에 따라 수용인원의 25% 또는 100명 중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COVID-19은 대부분 사람들이 COVID-19 감염자와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그 사람과 직접 접촉할 때 전염됩니다. COVID-19 감염자는 기침, 재채기, 노래, 말 또는 호흡을 할 때 호흡기 비말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질병통제 예방센터에 따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동일 가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이 증가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COVID-19 확산 위험이 증가합니다.

- **가장 낮은 위험도:** 음식/음료 서비스는 드라이브 스루, 배달, 테이크 아웃, 및 도로변 픽업으로 제한.
- **중간 위험도:** 드라이브 스루, 배달, 테이크 아웃, 및 도로변 픽업을 권장. 현장 식사/음료 서비스는 야외 좌석으로 제한. 테이블 간격이 더욱 넓게 배치될 수 있도록 수용 좌석 수 줄이기.
- **높은 위험도:** 테이블이 더욱 넓게 배치될 수 있도록 실내 수용 좌석 수를 줄인 현장 식사/음료 서비스. 및/또는 테이블 간격을 더 넓히지 않은, 야외에 좌석이 있는 현장 식사/음료수 서비스.

- 가장 높은 위험도: 실내에 좌석이 있는 현장 식사. 수용 좌석 수를 줄이지 않았고, 테이블 간격을 더 넓히지도 않음.

다음 프로토콜에서 "가구"라는 용어는 "단일 생활 단위로 함께 사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기숙사, 남학생회, 여학생회, 수도원, 수녀원, 거주 요양 시설과 같은 기관 단체 생활을 포함하지 않으며, 하숙집, 모텔, 호텔과 같은 상업 거주 형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sup>1</sup> "직원"과 "종업원"이라는 용어는 종업원, 자원봉사자, 인턴 및 수습 직원, 학자 및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모든 개인들을 포함합니다. "방문자" 또는 "고객"이라는 용어는 일반인 및 사업체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업소", "현장" 및 "시설"이라는 용어는 허용된 활동을 수행하는 건물, 부지 및 인접한 모든 건물 또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LACDPH"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을 의미합니다.

본 프로토콜에서 다음 사람은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간주됩니다"

-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2회 접종 COVID-19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 이상이 경과한 경우, 또는
- 존슨 & 존슨(J&J)/얀센과 같은 1회 접종 COVID-19 백신의 1차 접종 후 2주 이상이 경과한 경우.

\*이는 현재 식품 의약청에서 승인한 COVID-19 백신인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및 존슨앤존슨(J&J)/얀센 COVID-19 백신에만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응급 사용을 허가한 COVID-19 백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예: 아스크라제네카/옥스퍼드) WHO 승인 COVID-19 백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HO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술집은 주정부 공중 보건 담당관이 도입한 조건 외에도, 직원 안전 및 감염 관리 프로토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이 문서 및 관련 지침은 추가 정보 및 자료가 확보되면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버전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웹사이트 <http://www.ph.lacounty.gov/media/Coronavirus/>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본 점검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1)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의 정책 및 실천 방법
- (2)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
- (3) 감염 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
- (4) 직원 및 일반 대중과의 소통
- (5) 중요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

시설 재개 프로토콜을 계획할 때 위 5가지 핵심 부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적용되는 모든 시설은 아래에 열거된 모든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조치가 귀하의 시설에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 이름: \_\_\_\_\_

시설 주소: \_\_\_\_\_

이전 최대 수용인원: \_\_\_\_\_

제한 수용인원: \_\_\_\_\_

게시 날짜: \_\_\_\_\_

<sup>1</sup>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규정, 제 22 권 §22.14.060 - F. 가족의 정의. (Ord. 2019-0004 § 1, 2019.)  
[https://library.municode.com/ca/los\\_angeles\\_county/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22PLZO\\_DIV2DE\\_CH22.14DE\\_22.14.060F](https://library.municode.com/ca/los_angeles_county/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22PLZO_DIV2DE_CH22.14DE_22.14.060F)

**A. 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의 정책 및 실천 방법  
(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합니다.
- 취약계층 직원(만 65세 이상 고연령자, 임산부,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가능한 한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할당하고, 해당 직원은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직업 보건 서비스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합니다.
- 모든 직원에게 아프거나 COVID-19 감염자에게 노출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 LACDPH의 [입장 증상 점검 지침](#)에 따라, 직원, 공급업체 및 배달 담당자들이 작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입장 증상 점검을 시행합니다. 증상 점검에는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현재 고립 또는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여부 관련 확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원격으로 하거나, 직원이 도착하는 즉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체온 점검 또한 가능하면 직장에서 확인합니다.
  - 음성 증상 점검(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0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입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점검(출입 비허가):
    -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sup>2</sup> 하지 않았고, 지난 10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 또는 현장 근무를 시작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http://ph.lacounty.gov/covidquarantine)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 또는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http://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직원들이 집에 머무를 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자격 대상 직원들에게 정부 또는 고용주의 휴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는 [2021년 COVID-19 유급 병가 법규 부록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를 포함한 유급 병가 및 COVID-19 근로자 보상 혜택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 한 명 이상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사례)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알리면, 고용주는 해당 사례자가 자택 고립하도록 하고, 작업장에서 사례자에게 노출된 모든 직원을 즉시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계획 또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계획은 직장에서 추가 노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COVID-19 통제 조치를 추가해야 할 수 있어야 하기에, 모든 격리 대상 직원에게 진단 검사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시설의 계획에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국의 지침인 [직장의 COVID-19 대응법](#)을 참조하십시오.
- 소유주, 매니저, 또는 운영자가 사업장 내에서 14일 이내에 세(3) 건 이상의 COVID-19 사례를 확인하면, 고용주는 해당 집단발병을 공중 보건국에 (888) 397-3993 또는 (213) 240-7821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www.redcap.link/covidreport](http://www.redcap.link/covidreport)에 보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되면 공중 보건국은 감염 통제 지침 및 권고, 기술적 지지 및 시설별 관리 조치를 포함한 집단발병 대응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국은 집단발병 조사를 위해 시설에 사례관리자를 배정하여 시설의 대응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다른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직원에게 코와 입을 가리는 적절한 안면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C DPH의 COVID-19 마스크 웹페이지 <http://publichealth.lacounty.gov/acd/ncorona2019/masks/>를 참조하십시오. 직원은 근무 중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sup>2</sup> 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2 회 접종 백신(예: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의 2 차 접종 후 이(2) 주 이상 경과, 또는 1 회 접종 백신(예: 존슨앤존슨(J&J/얀센))의 접종 후 이(2) 주 이상 경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밸브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 직원들에게 안면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기, 매일 안면 마스크를 세탁 또는 교체하기 등을 포함한 안면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및 관리법을 지시합니다.
- ❑ 고객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안면보호대를 제공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고객과 교류하는 안내원, 서빙 직원뿐만 아니라, 손님 응접 구역에 출입하는 테이블 정리 담당과 서빙 보조 및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위에 안면보호대를 착용합니다.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면 착용자의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닿는 것을 방지해 주고, 안면보호대를 착용하면 착용자에게 다른 사람의 비말이 닿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고용주에게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를 보여준 직원에게는 안면보호대 착용은 선택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COVID-19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하고 안면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예방접종 완료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각 직원이 허용가능한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했다는 기록을 서면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보여준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의 사본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 2회 접종 백신(화이자-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의 2차 접종을 맞은 후 2주 이상이 경과했거나, 1회 접종 백신(존슨앤존슨 [J&J]/얀센)의 1차 접종을 맞은 후 2주 이상이 경과했으면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간주됩니다.
  - 직원이 고용주에게 COVID-19 예방접종 완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다음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카드(예방접종한 사람의 이름, 접종한 백신의 유형 및 마지막 접종 날짜를 포함) 또는 예방접종 카드의 사진인 별도의 문서 또는 전화기 또는 전자 기기에 저장된 참석자의 백신 카드 사진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예방접종 전체 문서 (예방접종한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이 COVID-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 ❑ 안면보호대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착용하고 세척 및 소독합니다.
- ❑ 직원들이 안면 마스크를 일관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안전하게 벗을 수 있는 휴식 시간 외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금지입니다. 직원은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 항상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선호됩니다.
- ❑ 개별 고객이나 일행당 서빙하는 직원의 수는 임금 및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는 한에서 제한합니다.
- ❑ 직원들이 식사 및/또는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공간 또는 구역은 수용인원을 감소시키고 직원들 간의 거리를 최대화합니다. 이는 다음을 통해 달성됩니다:
  - 식사 또는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 개인들 간 최소 6 피트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최대 수용인원 게시하기
  - 식사 및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또는 구역에서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엇갈리게 배정하기, 그리고
  - 테이블을 최소 8 피트 간격으로 배치하기, 수용인원을 줄이기 위해 의자를 제거하거나 의자에 테이블로 사용금지 표시하기,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닥에 표시하기, 및 얼굴을 마주하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의자 배치하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더욱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 사용이 권장되지만, 이를 수용인원 줄이기 및 신체적 거리 유지하기의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 직원들에게 손 자주 씻기, 손 소독제 사용하기 및 장갑 적절히 사용하기 등을 포함한 손 위생 관리법을 실천하라고 지시합니다.
- ❑ 직원들에게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 ❑ 직원들에게 기침 및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가릴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버린 직후 비누와 따뜻한 물로 최소 20초 동안 손을 씻습니다.
- ❑ 모든 직원, 공급업체 및 배달 담당자에게 신체적 거리두기 유지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안면 마스크 착용하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 휴게실, 화장실 및 기타 공용 구역은 다음 일정에 따라 다음 빈도로 적어도 하루에 한번 운영 시간에 소독합니다.

- 휴게실 \_\_\_\_\_
- 화장실 \_\_\_\_\_
- 기타 \_\_\_\_\_

- 소독제 및 관련 용품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_\_\_\_\_
- COVID-19에 효과적인 손 소독제를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장소에 비치합니다:  
\_\_\_\_\_
- 본 프로토콜 사본을 모든 직원들에게 배포합니다.
- 선택 사항 -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  
\_\_\_\_\_

**B.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

**실내 좌석 구역:**

- 실내 좌석 구역의 고객 수는 실내 수용인원의 25% 또는 최대 100명의 참가자 중 적은 수로 제한합니다. 가능한 경우 주차장은 집결 지점을 제한하고 적절한 분리를 보장하도록 재구성합니다.
  - 실내 식사 공간의 최대 제한 고객 수: \_\_\_\_\_
-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은 고객 사이에 최소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객이 앉은 한 테이블의 의자 뒤에서부터 근처 테이블 의자 뒤까지 거리를 측정했을 때 최소 육(6) 피트 간격으로 테이블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고객이 테이블 좌석에 앉아 있을 때 및 좌석을 뒤로 밀었을 때를 고려해 테이블 사이에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합니다. 플렉시글라스 또는 기타 장벽은 테이블 사이 및 손님 사이의 필수 거리두기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아래의 섹션 "허용 가능한 수용인원에 따른 좌석 배치 승인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현장 실내 테이블의 좌석은 여섯(6) 명 이하의 동일 그룹으로 제한합니다. 실내의 한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은 같은 가구여야 하고, 그러므로 서로 6피트의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테이블에 앉기 전에 안내원은 실내 테이블의 일행 모두 동일 가구여야 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 일행의 모든 구성원이 자리에 앉기 전에 COVID-19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최대 여섯(6) 가구로 구성된 최대 여섯(6) 명의 일행이 한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손님은 자리에 함께 앉기 전에 운영자에게 필수 증명서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및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인 예방접종 카드(예방접종한 사람의 이름, 접종한 COVID-19 백신의 유형 및 마지막 접종 날짜를 포함) 또는 예방접종 카드의 사진인 별도의 문서 또는 전화기 또는 전자 기기에 저장된 참석자의 백신 카드 사진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COVID-19 예방접종 완료 문서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야외 좌석 구역:**

- 야외 좌석 구역의 고객 수는 신체적 거리 두기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아야 합니다. 야외 좌석 구역은 손님이 앉은 한 테이블의 의자 뒤에서부터 근처 테이블의 의자 뒤까지 측정했을 때, 최소 육(6) 피트 간격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플렉시글라스 또는 다른 장벽은 테이블 사이 및 손님들 사이의 필수 거리두기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아래의 섹션 "허용가능한 수용인원에 따른 좌석 배치 승인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모든 테이블을 위에서 설명한 대로 거리를 두고 각 테이블에 최대 **여덟(8)** 개의 좌석을 둔 후, 이용 가능한 좌석의 총 개수로 결정된, 야외 좌석 공간의 최대 고객 수는 \_\_\_\_\_로 제한합니다.

- 현장 야외 좌석은 **여덟(8)** 명 이하의 동일 그룹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야외 테이블에 앉은 모든 일행은 3가구 이내일 수 있습니다. 손님이 테이블에 앉기 전에 안내원은 테이블의 일행은 3가구 이내여야 한다고 구두로 알려야 합니다.
- 일행의 모든 구성원이 COVID-19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최대 여덟(8) 가구로 구성된 최대 여덟(8) 명의 일행이 한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손님은 자리 함께 앉기 전에 운영자에게 필수 증명서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및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인 예방접종 카드(예방접종한 사람의 이름, 접종한 백신의 유형 및 마지막 접종 날짜를 포함) 또는 예방접종 카드의 사진인 별도의 문서 또는 전화기 또는 전자 기기에 저장된 참석자의 백신 카드 사진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COVID-19 예방접종 완료 문서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시설 운영자는 제한 수용인원을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수용인원을 추적하고자 야외 식사 구역의 모든 출입구에서 출입하는 고객의 수를 엄격히 그리고 계속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이 불충분하거나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용인원이 초과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의 운영자는 보건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임시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 영업 정지 기간은 현장 공중 보건 감사관이 해당 문제가 시정되었다고 결정할 때까지입니다. 가능한 경우,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단일 입구와 별도의 출구를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 시각적 표시를 이용하는 등 고객들이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당 외부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또는 입구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직원들이) 시설 입구 근처이나 가장 가까운 고객으로부터 최소 6피트 떨어진 곳에서, 시설에 입장하는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도달한 경우 또는 예약 시간까지 출입문 밖에서 고객들이 6피트 간격으로 줄을 서도록 안내합니다.
- 야외 구조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캘리포니아 보건국의 야외 사업 운영을 위한 야외 구조물 사용에 관한 필수 지침에 명시된 대로 야외 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야외 시설을 위한 주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야외 구조물은 실내 시설로 분류되고, 현재 금지입니다. 야외 시설을 위한 주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야외 구조물은 실내 시설로 분류되고, 현재 수용인원의 25%로 제한됩니다.
- 바의 카운터는 알코올음료를 준비하거나 서빙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카운터에서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실내외 좌석 공간에 있는** 텔레비전이나 기타 화면을 고객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야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식당 프로토콜: 부록의 야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시설은 **실내** 리셉션, 연회 또는 기타 구성, 조직, 초대 행사 또는 어떤 유형의 모임도 주최할 수 없습니다.
- 가능한 경우,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단일 입구와 별도의 출구를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 고객이나 직원이 대기하는 장소에서 신체적 거리두기를 보장하려는 조치를 준수합니다. 여기에는 계산대와 단말기, 카운터 대기 줄, 화장실, 엘리베이터 로비, 고객 안내대와 대기실, 대리 주차 서비스를 위해 차를 두는 곳과 받는 곳, 기타 고객이 모이는 모든 장소가 포함됩니다.
  - 일반 대중이 서서 대기하거나 줄을 서는 장소에 6피트 간격으로 테이프 또는 기타 표시를 합니다.
  - 가능하면 직원들과 고객들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도와 통행로에 유동 인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정합니다.
  - 가능하면, 안면보호대와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위의 구역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고객으로부터 최소 6피트를 유지하며 고객들이 신체적 거리두기 절차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주문, 태블릿 메뉴판, 좌석 안내 요청 문자 메시지, 비접촉식 결제 옵션 등 기술 사용이 가능한 영역에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 고객, 배달 기사, 직원들 사이에 신체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계획합니다.

- 고객, 공급업체, 배달 기사 또는 기타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는 식당 안팎의 바닥에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습니다.
- 가능하면 포장 및 배달은 비접촉으로 진행하고 손님과의 접촉은 기타 전자 기기로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 직원과 고객과의 접촉은 가능하면 접촉을 최대 5분으로 제한합니다.
- ❑ 직원과 고객의 접촉을 제한합니다.
  -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기 힘든 계산대, 고객 안내대, 주문 카운터 등에 칸막이나 플렉시글라스 같은 물리적 장벽을 설치합니다.
  - 각 테이블에 서빙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합니다.
- ❑ 직원과 고객이 화장실, 복도, 바 구역, 예약 및 신용 카드 단말기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에 모이는 것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 ❑ 신체적 거리두기 프로토콜은 모든 사무실, 주방, 저장고, 워크인 냉동고 또는 기타 고 밀집 고 접촉 직원 구역에서 사용합니다.
  - 우발적인 접촉이 생길 수는 있으나, 15분 미만, 가급적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이며, 직원들은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C. 감염 통제를 위한 조치

#### 영업 재개 전

- ❑ 재개 30일 이내에 HVAC 전문가가 점검했고 HVAC 시스템은 정상 작동 상태이며, 가능한 최대로 작동시켜 환기를 증가시킵니다. 효과적인 환기가 작은 입자의 공기 매개 확산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 휴대용 고효율 공기청정기 설치, 건물의 공기 필터를 최고급으로 교체, 모든 작업장에 외부 공기의 유입 및 환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조 등을 고려해 봅니다.
  -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의 [실내 환경을 위한 환기, 여과 및 공기의 질에 대한 예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참고: 환기 및 기타 실내 공기의 질 개선은 안면 마스크 착용(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특정 고위험 환경 제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거리두기, 자주 손 씻기, 및 다른 가구의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 제한하기와 같은 의무 예방지침에 추가로 시행할 수 있지만,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 ❑ 운영되고 있지 않던 시설의 경우 시설 배관에 있던 오래된 물을 신선하고 안전한 물로 교체해줘야 하므로 시설을 재개하기 전에 온수 및 냉수를 각 5분 동안 틀어 물을 내려줍니다.
- ❑ 특히 영업하지 않았던 곳의 설비는 철저히 청소 및 소독/멸균(COVID-19에 대한 효과가 승인된 제품 사용)합니다.
  - 청소할 장소가 많아지면 필요에 따라 청소를 도와줄 제3자 청소 회사에 대한 옵션을 마련해 둡니다.
- ❑ 좌석 구역, 고객 안내대, 음료수 준비 구역 등의 공간에는 손 소독제, 소독용 물티슈 등 고객을 직접 돕는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생용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위생 시설은 항상 작동되도록 하고, 필요할 때 비누, 종이 수건 및 손 소독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재고를 항상 비축해 둡니다.
  - 손 소독제, 비누 디스펜서, 종이 수건 및 휴지통을 비접촉식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 ❑ 배달을 받는 보관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지정합니다. 물품 배달에 개인 간

접촉을 가능한 없도록 합니다.

### 식품 안전 고려 사항

- 캘리포니아 소매업체 식품 관리법(CRFC)에 명시된 모든 식품 안전 관리를 유지 및 준수합니다.
  -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135°F 이상),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41°F 이하) 보관합니다.
  - CRFC 규정에 따라 음식을 완전히 조리합니다.
  - 주방 도구와 기구의 세척 및 소독은 CRFC가 명시한 횟수만큼 시행합니다.
  - 직원 건강 및 위생 관리 규칙을 준수합니다. CRFC 규정에 따라 아프면 일을 하지 말고, 손을 자주 씻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 모든 음식과 음식 재료가 승인된 식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음식을 준비하는 직원은 근무 중에 다른 사람과 작업대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작업대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합니다.
- 탄산음료 기계와 같은 셀프서비스 기계는 고객 대신 매장 직원이 직접 사용해 고객에게 전달하고, 접촉 표면을 1시간 단위로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고객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또는 다른 고객이 사용할 수도 있는 식품이나 식기류가 있는 장소는 폐쇄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며, 적절한 경우 사용 후마다 폐기 또는 세척 및 소독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조미료통, 식기 통, 냅킨, 뚜껑, 빨대, 포장 용기 등이 구비된 셀프서비스 구역.
  - 샐사 바, 샐러드 바 또는 뷔페 스타일, 음식 시식을 포함한 셀프서비스 음식 구역.
  - 고객들을 위한 식후 박하사탕, 과자 또는 이쑤시개. 이런 물품은 영수증과 함께 제공되거나, 손님이 요청할 때만 제공합니다.
- 고객이 사용하기 전에 포장되지 않은 식기류를 여러 직원이 만지는 대신,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식기류를 포장하도록,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을 지정합니다.
- 테이블에서 또는 일반 용기(예: 피쳐, 유리병, 디캔터, 병)를 사용해 음료수를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음료수를 다시 채워 줄 때는 깨끗한 유리잔에 제공합니다.

### 시설 고려 사항

-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EPA 등록 소독제를 사용하여 최소 하루에 한번 또는 필요한 만큼 자주 청소 및 소독합니다.
- 필요에 따라 추가 위생 및 소독 절차를 감독하고 시행하는 직원을 교대 조당 한 명 지정합니다.
- 자주 접촉하는 표면과 접근 가능한 구역을 위한 청소 및 소독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공용 구역과 고객의 픽업 및 결제와 관련되어 있어 자주 만지는 물건(예: 테이블, 문손잡이 또는 핸들, 신용카드 결제기기)은 영업시간 동안 EPA 등록 소독제를 사용하여 최소 하루에 한번 소독합니다.
- 통행량이 많은 구역의 표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된 표면은 청소 및 소독을 늘리십시오. 매일 밤 (COVID-19에 효과가 입증된 제품 사용하여) 시설을 철저히 청소하고 살균/소독합니다. 가능할 때마다 청소를 완료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지를 작성합니다.
- 오디오 헤드셋 및 기타 장비는 매번 사용 후 바르게 소독하지 않으면, 직원 간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장비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적절한 소독 단계를 확인합니다.
- 설거지 담당자의 눈, 코, 입에 오염물이 튀지 않도록 안면 마스크, 보안경 및/또는 안면보호대의 조합을

보호 장비로 제공합니다. 설거지 담당자에게 불침투성 앞치마를 제공하고, 앞치마는 자주 교체합니다. 안면보호대 및 보안경과 같은 재사용이 가능한 보호 장비는 사용할 때마다 적절히 소독합니다.

- 야외 음료 서비스 구역 입구나 근처에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와 쓰레기통을 비치합니다.

### 고객 공간/ 서비스 공간

- 고객에게 음료수를 마시지 않을 때는 안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여기에는 **실내 또는** 야외 좌석 구역에 들어갈 때, **실내 또는** 야외 좌석 **구역** 어디든 걸어 다닐 때 및 화장실을 사용할 때가 포함됩니다. 이는 모든 성인과 만 2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에 위생 천이 달린 안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이 턱 아래에 딱 맞게 제작된 안면보호대가 선호됩니다. 단방향 벨브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직원과 다른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면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고객에게 제공할 안면 마스크를 준비해 둡니다.
  - 고객은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동안에만 안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려면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고객은 음료수를 마시는 동안 걸거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면 마스크의 착용을 거부하는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거부하고 **부지**에서 나가라고 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안내서. 업체는 각 고객 일행이 바뀔 때 테이블을 소독한 후, 적어도 다음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 지침이 있는 안내판 또는 카드(3 x 5인치 이하)를 테이블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음 간단한 지침을 준수하여 계속 장사를 하고, 직원을 보호하며, 다른 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음료수가 서빙되기 전에 그리고 음료수를 다 마신 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서빙 직원이 테이블에 올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테이블에서 이동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손을 씻거나 소독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의 건강과 다른 고객님의 건강 보호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OVID-19 테이블용 안전 그래픽의 예시는 <http://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food/TableTop.pdf>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음료 서비스 구역에 손님이 자리에 앉을 때 그리고 시설에 머무는 동안 이런 지침을 알리고 상기시키기 위해 안내판, 디지털 보드, 메뉴와 같은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빙 직원이 고객을 향해 기울이지 않고도 고객의 주문을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이나 텔레비전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 손님이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입장 증상 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은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발열이나 오한, 및 고객이 현재 고립 또는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고객에게 직접 시행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체크인 할 때 점검 또는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판**을 시설 입구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음성 증상 점검(출입 허가). 증상이 없고 지난 10 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일 입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양성 증상 점검(출입 비허가):
    - 지난 10 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현재 격리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quarantine](http://ph.lacounty.gov/covidquarantine)에 있는 격리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거나 현재 고립 명령을 수행 중인 사람은 입장할 수 없으며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택 고립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ph.lacounty.gov/covidisolation](http://ph.lacounty.gov/covidisolation)에 있는 고립 지침을 제공하십시오.
- ❑ 고객이 사용한 물건(더러운 컵, 접시, 냅킨 등)을 옮기거나 쓰레기봉투를 취급하는 서빙 직원, 서빙 보조원 및 기타 직원은 임무를 완료한 후에 손을 씻고 앞치마를 착용하고, 앞치마는 수시로 교체해 줍니다.
- ❑ 재사용 가능한 메뉴판은 손님이 사용한 후 세척 및 소독합니다. 고정 메뉴 보드, 전자 메뉴판 또는 모바일로 다운로드 가능한 메뉴판과 같은 대안을 고려합니다.
- ❑ 손님이 앉는 구역은 매 사용마다 청소 및 소독합니다. 좌석, 테이블 및 테이블 위에 있는 기타 물품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거나, 손님이 사용한 후에 세척/소독해야 합니다. 각 테이블의 식탁보는 손님이 사용한 후에 교체하고, 단단한 비다공성 표면은 손님이 사용한 후 소독합니다.
- ❑ 포장 용기는 고객이 직접 담고 요청 시에만 제공됩니다.
- ❑ 현금 없는 거래를 권장합니다. 시설에 합리적일 경우, 고객은 자신의 신용 카드/현금 카드를 본인이 긁을 수 있으며, 손님이 사용할 때마다 카드 판독기를 철저히 소독합니다.
- ❑ 손님이 식탁에서 사용한 테이블보나 냅킨 같은 더러운 리넨은 각 손님이 사용한 후 제거합니다. 직원은 더러운 리넨을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합니다.
- ❑ 선택 사항 - 기타 조치를 설명하십시오(예: 노인 전용 시간, 붐비지 않는 시간대 이용 보너스 제공):

#### D.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조치

- ❑ 본 프로토콜 사본 또는 시설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COVID-19 안전 준수 인증서 사본을 시설의 모든 공공 입구에 게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COVID-19 안전 준수 자가 인증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싶으시면, <http://publichealth.lacounty.gov/eh/covid19cert.htm>를 방문해 주십시오. 시설은 요청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설 현장에 프로토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 식당에 도착하는 고객들에게 6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고,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먹거나 마시지 않을 때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아프거나 COVID-19과 일치하는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한 안내판을 모든 입구에 게시합니다. 추가 자료 및 업종별 사용 가능한 안내문 예시를 보시려면 [카운티 DPH COVID-19 지침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소매업체는 온라인 매체(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를 통해 영업시간, 안면 마스크 필수 사용, 그리고 사전 주문, 예약, 선불, 포장 및/또는 배송과 관련된 정책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E. 중요 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

- ❑ 손님/고객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합니다.
- ❑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매 또는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 ❑ 이동에 제한이 있는 고객 및/또는 공공장소에 가면 위험한 고객도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합니다.

위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추가 조치는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본 문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본 프로토콜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업체 담당자 이름:

---

전화번호:

---

마지막 개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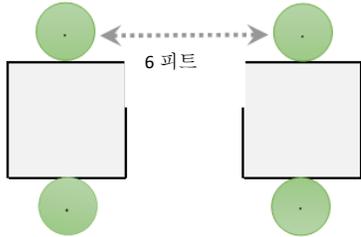
---



좌석 배치 도표

다음 여섯(6)개의 도표는 실내 및 야외 좌석의 예시로 사용해야 합니다. 테이블 사이의 공간을 감소하기 위해 그리고 수용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장벽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가구의 고객 사이에 최소 6 피트의 신체적 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테이블은 각 가장자리의 거리가 8 피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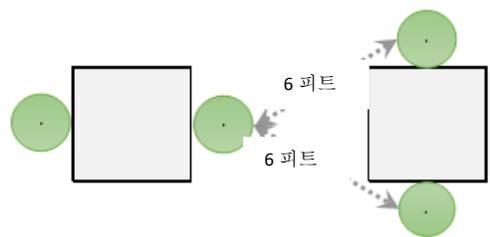
도표 1



**좌석 나란히 배치**

의자 사이에 6 피트 거리  
의자 가장자리에서 의자 가장자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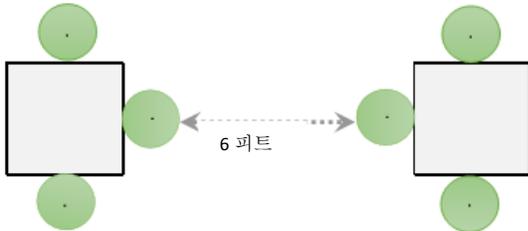
도표 2



**좌석 수직 배치**

고객 좌석과 근처 테이블 좌석 사이에 6 피트 거리  
의자 가장자리에서 의자 가장자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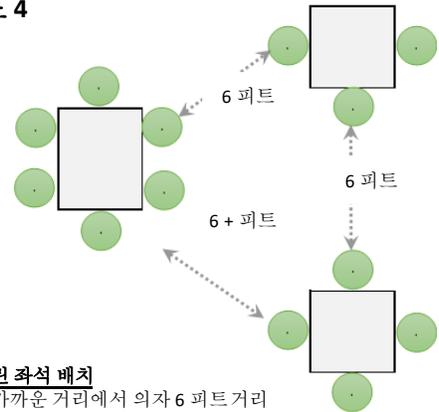
도표 3



**좌석 나란히 배치**

의자 뒤에서 의자 뒤까지 6 피트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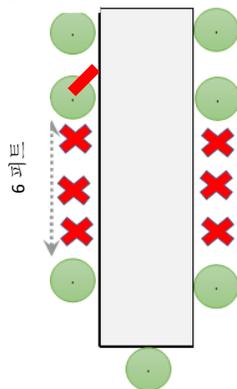
도표 4



**엇갈린 좌석 배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의자 6 피트 거리  
모든 테이블 모양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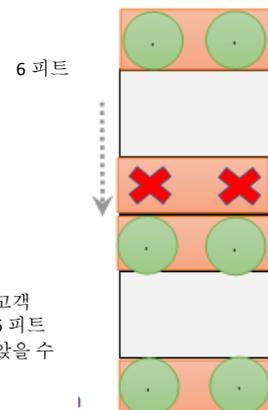
도표 5



**장벽이 없는 공용 테이블**

가장 가까운 다른 일행과 6 피트 거리  
의자 가장자리에서 의자 가장자리까지

도표 6



**부스**

고정 부스는 고객  
사이에 최소 6 피트  
간격을 두고 앉을 수  
있습니다.